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2023. 2. 24.-2023. 3. 10.
-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주)광주사랑테크	200111-0292113	채권(예금)	₩1,501,020	광주 광산구 사암로 118 번길 11-10
2	박길식	1964.○.30.	채권(예금)	₩34,460,400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40 번길
3	배정용	1979.○.12.	채권(예금)	₩1,494,000	광주 광산구 우산로
4	서경수	1979.○.23.	채권(예금)	₩18,856,800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5	박병선	1983.○.07.	채권(예금)	₩18,597,600	전남 여수시 덕충안길
6	(주)세덴산업개발	110111-4348119	채권(예금)	₩1,501,020	서울 금천구 범안로 17 길 70
7	정용운	1978.○.20.	채권(예금)	₩19,116,000	경기 이천시 종리천로 97 번길
8	송승운	1983.○.14.	채권(예금)	₩9,214,00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4 번길
9	이기상	1986.○.26.	채권(예금)	₩10,841,040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간로
10	류창학	1971.○.19.	채권(예금)	₩9,558,000	서울 중구 다산로 8 길
11	노영주	1968.○.20.	채권(예금)	₩9,558,000	전북 군산시 칠성안 1 길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